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13-14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현황

2011. 12.



법무부

목 차

| 연번 | 권고내용(국가) | 페이지 |
|----|---|-----|
| 1 | 인권협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이행 및 홍보 노력(브라질) | 1 |
| 2 |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이행 노력 강화(인도네시아) | 3 |
| 3 |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 채택(알제리) | 4 |
| 4 | 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알제리) | 6 |
| 5 |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모든 단계에서의 이주자 인권 보장 조치(캐나다) | 8 |
| 6 |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캐나다) | 11 |
| 7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캐나다) | 15 |
| 8 |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 기소 및 처벌,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child-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캐나다) | 18 |
| 9 | 이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여성, 아동을 특별히 강조(캐나다) | 22 |
| 10 | UPR 후속이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 관점(gender perspective) 반영(슬로베니아) | 26 |
| 11 |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CEDAW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벨기에) | 27 |
| 12 | 여성의 권리 증진을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 과제로 고려(이태리) | 32 |
| 13 |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를 국제난민법에 맞게 개선(루마니아) | 34 |
| 14 |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개정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캠페인 실행(멕시코) | 36 |
| 15 |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시스템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멕시코) | 38 |

| 연번 | 권고내용(국가) | 페이지 |
|----|---|-----|
| 16 |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미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북한),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보안법 도입(영국) | 42 |
| 17 |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 조치(영국) | 43 |
| 18 | 고문방지위의 우려(형법상 고문 정의 부재 및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주장) 및 아동권리위의 우려(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입법, 사법 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 채택(북한) | 44 |
| 19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자 권리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의 유보철회(멕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페루) | 47 |
| 20 |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을 범죄화하는 입법조치(알제리) | 49 |
| 21 |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움 유지(벨기에, 이태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2008.6.1 개회되는 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 통과(네덜란드, 영국),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사위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 중인 입법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룩셈부르크) | 50 |
| 22 |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체코) | 51 |
| 23 | 명확한 시한을 정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 유보 철회(영국) | 52 |
| 24 |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브라질) | 53 |
| 25 | 정치범, 양심수 관련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채택(북한) | 55 |
| 26 | 강제실종협약 서명(프랑스) | 56 |
| 27 |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 57 |
| 28 |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는데 주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정 재검토 권고(슬로베니아) | 59 |
| 29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 60 |
| 30 | 학교내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법 즉각 개정 및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 이행(이태리) | 62 |
| 31 | 초국가범죄협약 인신매매 의정서(Palermo Protocol) 비준(페루) | 64 |

1 인권협약기구 견해의 이행 및 홍보 노력(브라질)

■ 추진 현황

1 이행 노력

-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에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그 이행을 추진 중임
 - 사회권규약위원회 : 인권교육 및 홍보 지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공교육 제도 강화 등
 - 고문방지위원회 : 지속적인 대응감방 철폐, 군대 내 자살예방프로그램 확충, 범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 국제결혼여성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피해 외국인 여성의 체류보장, 결혼이민자에 대한 법률구조 등
- 국제인권조약기구 견해를 공무원 교육과정에 포함
 - ※ 자세한 내용은 연번 5 인권교육 참조
-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점검
 - '08. 7.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UPR 심의 결과 보고
 - '09. 10. 국가인권정책협의회, UPR 후속조치 점검방안 협의
 - '10. 8. UPR 후속조치 현황 보고서 작성
 - '10. 9.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UPR 후속조치 현황 보고
 - '11. 11. UPR 후속조치 현황 보고서 수정·보완

●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보고

- '10. 9.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사회권규약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보고
- '11. 12. 법무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보고

2 홍보 노력

●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국제인권조약 홍보

- 법무부 인권국,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홈페이지에 국제인권조약기구 최종견해 게재
- 국가인권위원회는 UN 인권조약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최종견해와 권고를 번역한 책자 발간
- 권리 영역별로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및 해당 조약기구의 권고 사항이 포함된 NAP 책자를 일반에 배포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견해의 내용을 총괄하고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부 내 공식적인 시스템 부재

■ 향후 추진계획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모색
- 향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사항 반영 노력
- 인권교육과정,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한 국제인권조약 교육 및 홍보 지속

■ 추진 현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차별금지 및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 외국인고용법의 시행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여부를 점검, 조치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문제, 사업장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 기능을 갖춘 외국인력 상담센터 개소('11. 7.) 및 현장밀착형 상담을 위한 외국인력 지원센터 추가 개소('11. 3.)
 - ※ 외국인력 상담센터는 영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상담서비스 제공, 외국인력 지원센터는 기존 서울, 의정부 등 7개 거점센터 외에 영암, 원주 등 29곳에 소지역센터 추가 개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및 사업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률의 실효성 강화
- 외국인력 상담센터 등의 상담 역량 강화, 국가별 체류규모 등을 감안한 상담 가능 언어 확대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

■ 추진 현황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 여성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재한외국인의 권리보호 및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권리구제 기구 설치
 - ※ 인권피해 외국인의 상시적 권익보호를 위해 고충상담관 및 인권담당관제 병행
-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및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 매년 10월경 외국인근로자 등 대상으로 법무부 등 6개 중앙부처 합동 고충상담·법률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 치과검진 등 의료지원
- 인권구조팀(Immigration Bluebirds) 설치·운영
 - 인권피해가 중대한 이주여성 등의 재한외국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외국인을 직접방문 조사, One-stop 출입국행정 서비스 제공
- 여성외국인 관련 업무 시 여직원 참여
 - 불필요한 질문·신체접촉 등 금지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여성 외국인에 대한 단속·조사·보호 등 제반 업무 수행 시 여직원 참여
- 특별체류 허가
 - 불법체류 여성 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 유예, 일정한 요건 하에서 특별체류 허가

●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금지, 출산 시 산전후 휴가보장,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 권익을 보장하고 있음

※ 여성 이주근로자가 임신·출산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출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09년)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인권피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사권의 법적근거 미비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지조사가 어려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에 근거, 동 시행령에 인권침해 피해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조사권” 명시필요

- 단속과정의 긴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사례 발생 여지 상존

■ 향후 추진계획

- 재한외국인 의료지원 확대방안 마련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재한외국인에 대해 정기적인 의료지원 및 고충상담을 통해 건강권 보호 및 권익증진 도모

- 단속·조사·보호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사업장에서 여성 이주근로자에 대한 차별관행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 권익보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4 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알제리)

■ 추진 현황

-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구체화하고 있음
-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노력하고 있음
 - 집회와 시위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법 해석·적용에 있어 최대한 엄격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음
- 집시법 상 금지·제한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 유지에 최선
-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경찰조치의 공정성 제고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시위문화 정착에 노력
 -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 209개 경찰관서에 1,494명 구성·운영 중
- '09. 9. 2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규정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10. 6. 30.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0. 6. 30.까지 법률 미개정으로, 현재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상태임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특정장소에서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소선점 신고 후 개최하지 않아 타인의 집회권이 침해받는 사례 빈발

※ 집회신고 후 미개최율 : '06년 96.21% / '07년 97.21% / '08년 97.35% / '09년 97.33% / '10년 94.66%

-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의무(집시법 제6조3항)에 대한 강제조항을 신설, 집회신고 남발을 줄여 시위문화를 개선

※ 현재, 같은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을 신지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 국회 행안위 계류중

■ 향후 추진계획

- 현행 집시법 하에서 집회신고 남발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
- ‘집회시위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잘 조화되도록 최대한 노력
-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 헌법불합치 결정('09. 9. 24)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 지속 추진

5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모든 단계에서의 이주자 인권 보장 조치(캐나다)

추진 현황(' 11. 8. 31. 기준)

1 법무·검찰 인권교육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교육 현황

| 연도 | 건·명 | 교육 회수 | 교육인원 |
|----------|-----|-------|--------|
| 2008 | | 78회 | 2,452명 |
| 2009 | | 83회 | 2,765명 |
| 2010 | | 70회 | 2,120명 |
| 2011. 8. | | 24회 | 740명 |
| 합계 | | 255회 | 8,077명 |

● 검사 교육

- 신입검사 과정, 변호사경력 신규임용검사 과정 등에 인권감수성 훈련, 역할극, 인권일반 교육 실시('08년~'11. 8월 총 18회 658명)

● 검찰·교정·보호·출입국 직렬별 인권감수성 훈련 관련 과정 운영

- '10.~'11. 8. 인권감수성 훈련과정 25회 운영을 통한 674명 교육 실시
- 기본교육, 전문교육에 교과목 편성을 통한 640명 교육 실시
- 인권강사 양성과정 27회 운영을 통한 48명 인권강사 양성

● 교정직 교육과정에 인권관련 교과목 편성 운영

- 신규교정직 7급 등 9개 과정 15회 1,041명 교육 실시
- 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6회 179명 교육 실시

● 외부 인권강사에 의한 법무부 기관방문 교육

- '09.~'11. 8. 대학교수, 변호사,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인권강사단의 검찰청,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방문 인권교육 65회, 2,237명 실시

● 인권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인권교육 교재 개발

- 검찰·교정·소년보호·출입국 분야 인권다큐멘터리 제작·배포
 - 검찰·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출입국관리 분야 인권 실무교재 제작·배포
 - 수용자를 위한 인권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형 집행, 불복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한 소책자로서 전 교정시설 내 수용자 거실에 비치하여 수용자에게 법령 정보 제공

2 경찰 인권교육

● 인권활동 발표, '공감과 확산' 워크숍 개최, 친인권제도 정착('11. 6.)

- 우수 인권사례에 대한 평가, 공감대 형성 ⇒ 전국 확산 유도

● '05. 5.~'11. 8.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강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900여명의 인권강사 배출 ⇒ 시민 인권보호 정책 추진

● 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교육원, 경찰중앙학교, 수사연수원) 과정별 특색에 맞은 인권교육

※ '08.~'11. 7. 약 1,478,820명

● 방방곡곡 찾아가는 인권교육 전개, 현장 경찰관 인권의식 제고

- 인권침해사례 등 실질적 교육으로 인권침해 예방
- ※ 연중, 110회 19,354명 경찰관 상대 인권교육 실시(전국 순회토론 교육 포함)

●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전국 순회 인권교육·토론'('11. 7. 18.~9. 30.)

- 수사부서 근무자 대상, 인권보호·수사공정성·부정부패 방지
- ※ 경찰청 인권센터장(총경)에 의한 전국 권역별 토론 교육 실시, 52회에 걸쳐 총 9,743명 교육

■ 향후 추진계획

3 법무·검찰 인권교육

- 기본교육, 전문교육에 교과목 편성을 통한 인권교육 실시
- 검사 교육
 - 신규임용 검사 대상 인권감수성 훈련 지속 실시
 -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과정 등에 인권과목 편성
- 검찰·보호·출입국 직렬별 독립과정 운영
 - 인권감수성과정 직렬별 운영
 - 교정직 ‘보안역량강화Ⅱ’ 등 8개 과정에 ‘교정과 인권’ 등 교과목 편성
- 지속적인 예산 확대 노력을 통해 지역별 인권감수성훈련 및 외부인권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 확대 계획
- 내·외부 강사단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내실화 방안 강구
- 인권교육지원시스템 마련 예정
 - 국내·외 인권교육 관련 자료 확보,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효율적 인권교육 지원 추진

4 경찰 인권교육

- 경찰 법집행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해 인권교육 지속 실시
 - 교육과정 인권교육 반복 실시

6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캐나다)

■ 추진 현황

1 연도별 관련 사건 추이

(단위 : 명)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10. |
|-----|------|------|------|------|------|------|----------|
| 합 계 | 780 | 710 | 842 | 848 | 824 | 761 | 608 |
| 처리 | 구공판 | 7 | 15 | 13 | 0 | 4 | 14 |
| | 불기소 | 716 | 647 | 696 | 759 | 781 | 710 |
| | 기타 | 57 | 48 | 133 | 89 | 39 | 37 |

- ※ 독직폭행 가혹행위, 특가법(독직폭행)에 대한 통계자료임
-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 ※ 기 타 :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타관이송 등

2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의 제정·시행

●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계자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자백의 증거사용을 배제하는 등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시행('02. 12. 27. 제정, '06. 6. 26. 전부개정)

-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 준칙 제3조 제1항)
- 검사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동 준칙 제3조 제2항)

※ 고문 등 가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단독조사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시행('05. 10. 4 제정, '10. 12. 27. 일부개정)
 -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동 규칙 제8조)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동 규칙 제11조)
 -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 조사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함(동 규칙 제64조 제3항, '10. 12. 개정)
 - 외국인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함(동 규칙 제64조 제4항, '10. 12. 개정)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이 화상조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화상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출장조사를 할 수 있음(동 규칙 제66조, '10. 12. 개정)

3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운영

- '06. 5. 법무부 인권국 출범, '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
 - 인권조사과에서 위 센터를 통한 신고 또는 직접 인지 등을 통해 법무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구제 중임
- 법무부 인권국 접수 사건 현황
 - '06년 209건, '07년 491건, '08년 1,059건, '09년 1,035건, '10년 1,023건, '11년 1~8월 718건으로 '08년 이후 1년 평균 1,000여건의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
 - '06. 5.~'11. 8. 접수된 4,535건 중 중 378건 인용·구제(인용·구제율 8.3%)
 - ※ 인용·구제 사건은 대부분 의료조치, 수용장소 변경, 수용자간 괴롭힘 중단 등 조치를 취한 사건으로, 법집행 공무원의 단속 내지 형집행 과정의 고문·학대 등에 대한 인용·구제사건은 많지 않음('09년 4건, '10년 9건)

4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설치·운영

- '10. 10. 22. 경찰청 수사국 내 '인권보호센터'를 감사국 내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직제 변경
 - 이를 통해 경찰청 내 인권보호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 증대

5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고문방지 노력

- 한국 경찰은 법집행 현장에서의 고문은 물론, 폭언·폭행 등 일체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 없도록 법집행문화를 쇄신해 옴
- 특히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사의 전 과정을 녹화하는 진술녹화시스템 도입, 운영 중('06년~)

| 구분 | 계 | 필수범죄 | | | | | 중요범죄 | | | | |
|--------|--------|--------|-------|--------|-------|-------|--------|--------|------|--------|--------|
| | | 소계 | 살인 | 강간·성폭력 | 증수뢰 | 선거사범 | 소계 | 강·절도 | 마약사범 | 사기 | 횡령, 배임 |
| '09년 | 73,371 | 15,776 | 1,948 | 12,148 | 806 | 874 | 57,595 | 17,861 | 695 | 33,284 | 5,755 |
| '10년 | 32,124 | 15,402 | 1,690 | 10,857 | 1,294 | 1,561 | 16,722 | 8,008 | 519 | 6,632 | 1,563 |
| '11년8월 | 10,934 | 5,994 | 912 | 4,751 | 264 | 67 | 4,940 | 2,643 | 457 | 1,333 | 507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는 조사 인력 부족으로 인권국에서 직접 조사하는 사건보다 법무부 내 타 실·국으로 이첩하는 사건이 많음
 - ※ '06. 5.~'11. 8. 직접조사 1,281건, 이첩 1,938건
- 수사과정의 고문은 근절되었으나 경찰력 행사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나 언어적 인권침해 소지 등은 지속적 개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인권보호수사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
-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홍보활동 강화 및 교정시설 화상조사시스템('10년~'11년 12개 교정시설 설치) 등을 활용하여 직접조사를 확대하고,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등을 통한 인지 활동 활성화
 - ※ 연도별 직접조사율 확대 추이 : '08년 18.3%, '09년 27.1%, '10년 36.0%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을 경찰청(차)장 직속 독립 직제로 추진
 - ※ '인권수호자'로서의 경찰의 위상 제고
- 경찰청 진술녹화실의 지속 확충 추진(1수사팀 당 1개 녹화조사실 목표)
- 경찰 법집행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해 인권교육 지속 실시
 - ※ '05년~'11년 8월말 경찰교육기관에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내부 강사를 900여명을 배출하고, 각급 교육마다 인권강의를 운영 중

추진 현황

1 주민등록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 주민등록제도는 유지 입장 지속

-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표시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제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억제 및 부정사용 처벌, 각종 지침을 통한 전산 시스템 사용자 제한·특별 교육 등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로 발급제한 신청자, 이혼자 등에 대한 등·초본 발급제한('09. 10. 2. 시행) 및 3자의 등·초본 발급 시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SMS 통보('09. 3. 18. 시행)를 필요한 경우로 확대('11. 11. 30.),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11. 11. 30. 시행) 등 다양한 보호대책 시행 중

●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 주민등록번호 단순 부정사용자도 처벌('06. 3월)하여 왔으나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09. 10. 2. 시행)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 공공기관의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

- 당초 15개 부처 613개 법정서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식별자(생년월일)로 대체 추진하였다가 전국 행정기관의 법정 및 일반 서식을 대상으로 확대

※ '08년 284개, '09년 3,999개, '10년 74개

- 행정기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의 설계기준’(별표 22) 개정 완료('11. 8. 9.)

※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란을 설치할 수 있음

2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이용

-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서비스 도입('05. 10월)

※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핀) :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자가 ID/PW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인터넷 상 개인인증수단

- 아이핀 이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09. 3월)

- 아이핀 발급·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휴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아이핀 2.0 서비스 개시('09. 7월)

※ 일정 기준 이상의 대형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제공하도록 정보통신방법 및 시행령 개정('08. 6월, '09. 1월), 동 규제를 적용받는 1,039개 웹사이트 공시('09. 6월, '10. 3월 시행)

3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중앙부처의 법정서식은 승인권을 통해 개선하나, 그 외에는 권고사항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향상으로 개선추세가 지속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국내 웹사이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이 일반화되어 있고, 조세·금융 분야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음

-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 방식을 아이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내 인터넷 환경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사생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 향후 법령서식 승인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 관련 지속적 개선 추진
 - 모든 민간 온라인 서비스에서 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아이핀 이용 확산을 추진
 - ① 아이핀 조기 정착 및 이용 보편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11년), ② 조세·금융 분야를 제외한 모든 민간 서비스에 아이핀 적용('12~'13년), ③ 주민등록번호 없는 인터넷 환경 조성('14~'15년)
 - 향후 아이핀의 확산 추이 및 경과를 고려하여, 행정적 목적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법제화 검토('15년~)
- ※ 아이핀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09. 3월 방통위 의결)

| 1단계('09~'11년) | 2단계('12~'13년) | 3단계('14~'15년) |
|--|--|---|
| 아이핀 확산 기반 조성 | 아이핀 이용 확산 | 아이핀 전면확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핀 이용 편의성 향상 • 아이핀 제도 활성화 • 아이핀 법·제도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금융을 제외한 민간 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아이핀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번호 없는 인터넷 환경 조성 |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 기소 및 처벌,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child-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캐나다)

■ 추진 현황

1 부부강간

- 「형법」은 배우자에 대한 강간행위가 일반 강간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
- 배우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고, 같은 취지의 판례도 있음
 - 아내를 강제로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 성립 인정
 - ※ '04. 8. 20. 서울중앙지법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아내를 강제로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함
 - 아내를 강간한 남편에 대해 성폭범위반(특수강간) 인정
 - ※ '09. 1. 16. 부산지법은 생리 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필리핀 국적의 처를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남편에 대해 특수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함(2008고합808)
 - ※ '11. 9. 22. 서울고법은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처를 간음한 남편에 대해 특수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함(2011노2052)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률상 처이므로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법률상 처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의 승낙이 추인된다고 할 수 없고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
 -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인정
 - ※ '09. 3. 17.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8노1462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

2 아동학대 행위자 기소 및 처벌

-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됨
 -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는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 아동매매,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 등을 금지
- 아동학대 행위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소·고발 조치로 기소 및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됨
 - ※ '09년 고소·고발 조치건수 : 299건(수사건수: 164건, 법원공판 및 판결: 135건)
 - ※ '10년 고소·고발 조치건수 : 290건(수사건수: 130건, 법원공판 및 판결: 160건)
 - ※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전국 44개소 설치·운영)

3 가정폭력 범죄화 등 행위자 기소 및 처벌

- 가정폭력은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성하고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08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의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 기간 | 접수 (신수) | 처리 | | | | | | | | |
|-------|------------|----------|-----|-------|----------|----------|-----------|------------|--------------|-----|
| | | 처분 합계 | 기소 | | 불기소 | | | | 가정보호 사건송치 | 기타 |
| | | | 구공판 | 구약식 | 혐의 없음 | 기소 유예 | 공소권 없음 | 각하, 죄안됨 | | |
| 2008년 | 13,334 | 13,341 | 354 | 1,487 | 227 | 2,593 | 3,707 | 22 | 4,833 | 118 |
| 2009년 | 12,132 | 12,154 | 266 | 996 | 213 | 2,197 | 3,745 | 60 | 4,579 | 98 |
| 2010년 | 5,185 | 5,240 | 112 | 465 | 113 | 918 | 1,654 | 30 | 1,908 | 40 |

4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 대검찰청과 법무연수원은 성폭력·가정폭력·아동대상범죄·성매매 사범 전담검사 및 수사관의 인권의식 강화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전문교육과 사이버교육 실시
 - ※ 검사교육 : 여성·아동 범죄수사 전문가 과정(전담 검사), 신임검사교육, 변호사특채 신임검사 교육과정
 - ※ 수사관교육 : 여성 및 아동학대 범죄 수사실무, 아동피해자진술분석
 - ※ 사이버교육 : 아동피해자 진술분석
 - ※ 가정폭력수강명령 강사 양성과정, 보호관찰사범별 실무

5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child-sensitive) 반영

- 검찰은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진술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아동 대상 범죄 수사 전문화 방안’을 수립·시행
 - ※ 아동 대상 범죄 전문화 방안 : 아동 전담 검사가 아동 성폭력 등 아동 대상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담, 소아정신과 또는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적극 활용, 피해아동 중복진술 방지
-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 제정,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 개정(*10. 4.)
 -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즉시 아동전담 검사에게 보고하여 지휘 받도록 하고, 아동전담 검사가 초동수사부터 공판, 형집행까지 전담하도록 함
 - 아동 성폭력 사건은 전문가 의견조회 의무화
 -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조사실 완비
 - 피해아동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녹화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참석하여 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조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주력

■ 향후 추진계획

- 부부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공소유지
- 아동 대상 범죄 전문화 방안 실효성 제고
- 전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인권강화 교육 강화
- 아동복지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 친권상실 청구요청권자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친권상실제도의 실효성 확보
 - ※ 요청권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초·중등학교의 장으로 확대

■ 추진 현황

1 다문화가족 지원

● 범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통합 지원 대책」 수립('06.4) · 추진

※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총괄 시행

- 민·관 합동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09.12)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10~'12)」 수립('10.5.7)

※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 ·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08. 6.)

※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당사자 간 사전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법 개정 시행('10. 11.)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을 체계화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08. 9.)

※ 다문화가족 대상 확대(귀화 및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등의 내용으로 법 개정('11. 4.)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 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 운영 확대

※ '06년 21개소 → '07년 38개소 → '08년 80개소 → '09년 100개소 → '10년 159개소 → '11년 200개소

-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서비스 제공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지도사 1,556명, 통·번역 인력 211명 배치('11년 8월말 기준)
-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제공
 - ※ 174명의 언어발달지도사, 1,050명의 부모교육지도사 배치('11년 8월말 기준)
-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이중언어강사 123명, '11. 8월말 기준)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다국어(10개국어)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 지자체 등 지역협의체 구성 및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한국생활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현지에서의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 베트남(2개소), 몽골(1개소), 필리핀(1개소), 총 3개 국가 4개 지역
- 다문화가족에 대한 온라인 정보제공을 위한 다국어 포털 ‘다누리’ 운영(6개 언어)
 - ※ '10. 4월 개설(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 매거진(Rainbow+, 연4회) 발간
 - ※ '10년 9개 언어 : 국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2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이주여성 보호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대상 365일 24시간 모국어 상담 및 긴급지원

- 이주여성상담원이 직접 10개 모국어로 전화·인터넷·면접상담을 지원하고, 경찰, 병원, 이주여성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
 - ※ 지원 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 중앙센터 이외에도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구미, 전주 등 6개 권역별 지역센터를 통해 각 지역 현장에서 직접 지원

● 이주여성쉼터(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도별 1~2개소씩(서울, 경기 각 2개소) 전국 18개소 운영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출국,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이주여성쉼터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개소수 | 18 | 2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1 | 1 | 1 |
| 입소정원 | 224 | 24 | 15 | 15 | 10 | 14 | 15 | 17 | 21 | 10 | 15 | 11 | 12 | 10 | 13 | 10 | 12 |

●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국제결혼 전,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실시

-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관계 법률 등 교육을 실시하며, '09년에는 국제결혼부부로 대상 확대('08년 526명 → '09년 2,670명 → '10년 2,742명)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폭력피해 발생으로 인한 이주여성 및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자녀보육 및 교육, 고용 및 주거, 문화적 이해 및 언어소통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미흡

■ 향후 추진계획

1 다문화가족 지원

- 결혼이민자 경제·사회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및 통·번역사 등 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교육훈련-일자리 연계 체계 마련 추진
 - ※ 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연계
 - 결혼이민자의 자조모임,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연계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활동 개발, 학교 학부모활동 참여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법령 제정·시행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강화(자본금 1억원 이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 사전교육 실시 및 한국생활 정보 제공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현지에서의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심화교육(베트남 1개소, 8시간→24시간), 사증발급 시 한국어 등 교재 제공(우즈벡, 캄보디아)

2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이주여성 보호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야간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2년까지 야간상담원을 14명까지 확충('11년 6명)
- 폭력피해 발생 예방 및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가족 상담 업무 강화

■ 추진 현황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점검 과정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및 협의('09. 10.)
 - UPR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10. 2.)
 - UPR 후속조치 이행 현황 종합('10. 3.)
 - UPR 후속조치 현황 보고서 작성('10. 8.)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UPR 후속조치 현황 보고('10. 9.)
 - UPR 후속조치 현황 보고서 수정·보완('11. 11.)

■ 향후 추진계획

- 여성 관련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 실무협의체 회의 등 개최 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상시 협의
 -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12. 5. 제2차 UPR 보고서 작성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노력 강화
 - 관계부처 권고사항 이행 관련 모니터링 결과 반영
 - 보고서 전체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보고서 작성 관련 주무부처와의 협력 강화

■ 추진 현황

1 여성에 대한 차별 정의 채택

- 「여성발전기본법」(’95. 12월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01. 5월 제정) 등을 통해 여성차별철폐협약상의 차별 정의¹⁾ 채택
 - 여성발전기본법은 별도로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본이념과 시책을 통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차별 정의 수용
 - ※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 모성보호의 강화,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적극적 조치 등
 - ‘성평등’ 및 ‘성차별’ 정의를 포함하여 국가성평등지수 작성 등 성평등 촉진시책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을 추진
 - ※ 추진 경과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여성정책기본법안) 국회 제출(’10. 11.)
 - 여성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11. 1.~2.)
 - 당정협약(’11. 2.,6.), 입법공청회(’11. 3.)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차별 사유로 성별,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예시함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 차별금지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항 검토

-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10. 4.~11.)에서 ‘성별, 혼인 여부, 임신·출산, 모성,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 사유로 인한 차별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 및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2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

●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운영

- 법무부는 매년 1~2회 외교통상부·여성부·검찰·경찰 등 10개 관계부처와 미 대사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09. 7. 미얀마에서 개최된 ‘아세안+3 초국가범죄고위급회의’ 참가
- ’10. 1.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검토 작업반 회의’,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초국가범죄 대책 포럼’ 참가
- ’10. 8.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개최된 ‘초국가조직범죄 대응 국가간 법집행 협력회의’, ’10. 10.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초국가조직범죄협약 당사국 회의’ 참가
- ’11. 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11. 4.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아시아조직범죄 국제회의’, ’11. 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초국가범죄 대응 수사공조회의’ 참가

●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단속

- ’10. 11. 인신매매성 불법 국제결혼중개에 적극 대응키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위 법 시행 이후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업무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상시 단속

- 해외성매매 사범 여권 (재)발급 제한을 위한 검찰 처분결과 통지 제도 확립
 - '10. 3. 해외성매매 등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건 처분 시 여권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여권 발급,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외교통상부에 통보 절차 확립
- 국제기준에 맞는 인신매매 개념의 법제화 노력
 - '09. 11. 2. 개최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형법에 인신매매 범죄를 도입하여 성매매 분야에 한정된 인신매매 개념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제노동, 장기적출 등에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의결
 - '11. 7.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해 포괄적 인신매매죄를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11. 10. 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

3 인신매매 피해 여성 보호

-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확대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외국인 지원시설을 신규로 개소(평택)하고 국내에서 성매매 피해에 노출된 외국인 여성들을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및 자국으로의 귀국 지원 서비스를 지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 확대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
 - 신변보호·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와의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감금, 구치, 추방되거나 범법자로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수사할 경우, 동법 제1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수사 종료 시까지 강제되지 불가
 - 공소제기 후 성매매 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 필요성 등 정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강제되지명령의 집행을 유예 가능, 이러한 경우 당해 외국인 여성은 대한민국의 보호·지원시설 이용 가능
- 법무부 고충상담실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체류 중 인권침해, 인신매매 등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충상담실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신고 접수
 - 신고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

■ 향후 추진계획

1 여성에 대한 차별정의 채택

-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 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차별 정의 지속 채택·반영 노력
- 각종 법령 상 남녀차별적 성격의 규정 정비 추진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일반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 여성차별철폐협약 상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 반영 노력

2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

-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 정책 발굴
-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인신매매 피해 여성 보호

- 성매매피해 외국인 여성 보호 및 지원 체계화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지원 등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성매매 노출정도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자활 지원

■ 추진 현황

- 여성 권리 증진 관련 정책을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

- ◆ 국정과제 중 여성 권리 증진 관련 과제 현황
 - ▲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성폭력 근절
 - ▲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 ▲ 사회 주요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 성인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여성 권리 증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확대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지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서비스 확대 등
- 여성정책 추진의 실효성 강화 및 외연 확대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 여성부에 가족 및 청소년 업무 이관, 여성가족부 출범('10. 3월)
 - ※ 성폭력 방지, 가정 내 양성평등 확산 등 관련 정책 추진 강화
-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전반을 파악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성평등지표·지수 체계 구축('10년)
 - ※ '10년 국가성평등 보고서 발표('10. 11.)
-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년)
 -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정책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법무부 내 여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05. 10월 출범하여 연 3~4회 회의 개최, 총 15회에 걸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법무부 여성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결혼이주여성, 여성수용자·출소자, 여성·아동피해자 인권보호 문제와 아동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관련 범죄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해 왔음
- ※ 근거 :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 695호, 2009. 6. 24.)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책 소관 부서에 제안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부내 여성정책 지원에 대한 적극 역할 제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성평등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시책 이행 및 점검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 및 정책개선 기반 강화
- 지역 차원의 여성지위 향상 및 권리 증진을 중요 의제로 다루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성평등 지수 개발('11년)
- 국가 성평등 지수·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정책방향 및 과제 개발 지속 추진
-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 실무협의체 회의 등 개최 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상시 협의
 -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추진현황

- 난민심사절차 및 난민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률 시행 ('09. 6. 20.)
 - 이의신청 기간 확대 (7일 → 14일)
 -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배제
 - 인도적체류허가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취업 허용
 -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용 규정 신설
 - ※ 난민신청 후 1년 동안 심사결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 취업 허용
 - 난민지원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 난민 자녀에 대한 보육비·유치원비 지원('11. 3. 1.)
 - 난민인정자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비(만 5세 이하) 및 유치원 학비(만 3세~5세) 지원
- 난민지원시설 설립 추진
 - 난민신청자 생계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지원 등을 위한 난민지원시설 설립 추진('11. 6월 공사 착수)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위한 예산, 조직 등 확충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난민심사 절차 및 난민처우 개선 지속 추진
- 난민지원시설 완공('13. 6월 예정)

■ 추진 현황

- '08. 1월부터 새로운 민법제도와 개인 신분등록제도 홍보물 배포
 - 호주제도 폐지 후 개인등록부인 가족관계 등록부 마련
 - ※ '08. 1월~6월까지 시행 6개월간 새 증명서 1,300,000부 발급
- 재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계부 또는 이혼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청 접수 및 처리
 - ※ '08년 한해 16,525건 접수, 처리 14,269건(인용 12,582건, 기각 574건, 신청취하 등 기타 1,113건)
- 토론회 및 관계기관(여성가족부,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여성단체 간담회 개최
 - 새로운 제도 시행 현황 및 개선사항 등 검토
-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 사례 조사
 -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직원 입사 시 제출 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실시 및 증명서 제출 최소화 요청('08. 4.)
- 공공기관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국무회의 보고 및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한 부처 협조 요청('08. 5. 6.)
- 호주제 폐지관련 정비대상 법령 발굴('09. 11.) 및 소관부처에 정비 협조 요청('10. 2.)
 - ※ 정비대상 : 총 279개 규정(법률 6개, 시행령 63개, 시행규칙 210개)

■ 향후 추진계획

- 본적, 호적등본 등 호주제 관련 용어들이 잔존해 있는 법령 발굴 및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 추진

■ 추진 현황

1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법은 '97년 제정 이래 행위자의 처벌은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 가족폭력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형사처벌 외에 접근제한, 보호관찰, 치료 및 상담,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11. 7. 개정('11. 10. 26. 시행)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긴급입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및 긴급전화 센터 1366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09년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 '10년에는 보호시설 입소자의 생계비, 아동교육비 및 양육비 등 보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긴급구조시 경찰관 동행, 홍보영상물 제작·배포·송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였음

- 각급학교에서의 가정폭력·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 추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폭력에 대한 불관용 및 평화적 갈등 해결능력의 배양이라는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하였음

●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마련('11. 5.)

-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범정부 민-관 공동협력 T/F 구성운영('10. 4.~'11.)
-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 공청회 개최 ('10. 9.~'11.)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11. 2.~5.)

● 국회 계류 중인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개정안

- (처벌법) 가정폭력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시 통역인 동석 등 특례규정 신설, 국제 결혼 관여단체 등에 가정폭력 신고의무 부과, 가정폭력범죄에 가족구성원간 성범죄추가 등
- (보호법) 여성가족부장관이 상담소 등의 운영실적평가를 매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감독 등에 반영할 의무 부과 등

2 가정폭력범죄 처벌 관련

●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수립('08. 6.)

●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 도입 추진

- '09. 9. 가정폭력 간담회 개최(접근금지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도입 여부 및 범위, 문제점 논의)

- '09. 10.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 관련 간담회(가정폭력 고위험자 판단을 위한 재범 위험성 평가 방법)
-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조사표 연구 및 한국형 가정폭력 관련 PTSD 평가척도개발

3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운영
 - 보호시설 안에서 발생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출입국관리법상의 처분에 대하여 사법절차상 소송제기 등의 권리 보장
- 법무부의 법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 운영
 - ※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및 생활안내 책자」를 영어,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발간, 보호실에 비치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가정폭력범죄 처벌의 어려움
 - 증거 수집에 있어 당사자와 참고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고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상파악, 증거확보에 애로가 있고, 관계인의 감정 격화에 따른 허위, 과장 진술이 많은 반면, 화해 후에 이를 반복할 가능성도 높음
 - 처분에 있어서 통상의 예에 따르면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하여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 대다수 고소인이 처벌보다 훈계, 재발방지 조치를 희망하므로, 형사처벌보다 가해자의 치료, 가족관계 개선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효과적인 사안이 많음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홍보를 통하여 전반적인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현실적 어려움

-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구제절차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여지 상존

■ 향후 추진계획

-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사건 접수 시 출동한 경찰관의 주거출입권 및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도입 추진

■ 불수용 사유

-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 가능성 없어 국가보안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폐지시 안보공백상태가 초래되어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
-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국가보안법이 합헌으로서 구성요건의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외국의 국가안보관련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명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추진 현황

- 국방부는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서 ‘입영 및 징총거부자’로 명칭 변경('09. 2. 18.)
 - ※ 거부행위가 ‘입영’ 자체의 거부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및 병역거부의 목적(징총거부) 반영이 가능하여 의미 전달이 용이함
- 입영 및 징총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11. 8. 30.)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는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에 대한 사항이므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08년 국민 여론조사 결과 대체복무 제도 도입 반대가 68.1%로 나타나 국민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남북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병력자원의 수급 문제, 비판적 사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 향후 추진계획

- 입영 및 징총거부자들의 사회복무 편입은 현재의 안보환경, 사회적, 정책적 여건 속에서 추진이 제한되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 추진 현황

1 교정 시설

-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의 발견시에는 교정시설 내에 설치된 고충 처리반에서 관련 직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통해 징계,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국 진정,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음

2 검찰관련 구금시설

- 검찰청 구치감(57개소), 대용감방(8개소), 경찰서 유치장
-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감찰
 -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구치감 및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반기 1회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불법 체포·구속 또는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음
 - ※ 신체 외상 등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유무나 유치장 근무자들의 불법행위 등

3 인권침해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법무부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 실시
 - '06. 5월~'11. 8월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총 245회 점검 실시
 - ※ '11. 8월 현재 법무부 구금·보호시설은 148개소로 전 시설 1회 이상 점검

- 실태점검 시 설문조사, 직접 면담 등을 통해 구금보호시설에서의 고문, 학대 등 인권침해행위 방지에 노력 중

4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보장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신설('07. 12. 14.)
 - ※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학칙 제·개정 시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 신설('11. 3. 18.)
 -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 학생 포상, 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공무의 집행으로 수용자에 대한 고문 및 학대의 사례는 발견되는 경우가 없는 실정임에도 교정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 시설로 단정하여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
- 최근, 수용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직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행정력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법무부 인권국의 인력 부족으로 구금·보호시설별 1년 1회 실태조사 불가능
 - ※ 현재 시설별 평균 3년에 1회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구치감, 유치장 등 체포·구속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 실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
-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인력 확보로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활동 강화
- 인권감수성훈련을 '12년에는 29회 실시하는 등으로 구금보호시설 직원 대상 인권교육 확대 예정
-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추진 현황

-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음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동 협약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가족의 정치·사회·문화·시민·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권리보장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불수용 사유

- 동 협약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는 현행 우리나라 법 규정과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동 협약에 가입 곤란
 - 다만,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신체의 자유 등 인권 관련 사항은 국내법 하에서 보장되고 있음
- 동 협약의 내용 중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상치되는 점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동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 등을 감안하여 비준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가족동반 허용(제44조), 외국인근로자가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설정(제52조 제4항), 모든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출생등록 및 국적부여(제29조), 불법체류 상태의 해소 조치(제69조제1항) 등 상치

20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을 범죄화하는 입법조치(알제리)

■ 추진 현황

-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수사기관 공무원의 고문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

■ 불수용 사유

- 위 조항을 고문방지 협약 제1조의 내용과 비교할 때 공무원의 범위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협약의 내용은 모두 위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어 별도의 입법적·행정적 조치는 불필요함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움 유지(벨기에, 이태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2008.6.1 개최되는 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 통과(네덜란드, 영국),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사위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 중인 입법 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룩셈부르크)

■ 추진 현황

- 사형제도의 존폐 및 집행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 현실, 국민 여론과 정서, 국내·외 상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문제임
- 우리 형사벌 체계가 사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형폐지는 형사벌 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고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 ※ '08. 9. 박선영 의원, '09. 10. 김부겸 의원, '10. 11. 주성영 의원 등이 '사형폐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

22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체코)

■ 추진 현황

- '08. 4.~11. 차별금지 관련 70여개 국내법 검토
- '08. 6.~10. 외국 입법사례 연구·종합, 자료집 3권 발간
 - ※ '각국의 차별금지법': EU지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입법례
- '08. 10.~11. 차별금지법 1차 T/F
 - 차별의 정의, 차별금지 사유, 차별금지 영역, 차별금지의 예외,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등 논의
- '09. 10.~12. 차별금지법 2차 T/F
 -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의 집행 현황, 실효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논의
- '09. 12.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
 -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10. 4.~11.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 차별금지 사유, 차별금지 유형, 차별금지의 예외, 차별금지의 구제수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 의견을 제시함

■ 향후 추진계획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이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 및 해외 사례 연구 등 지속

■ 추진 현황

-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철회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가 '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제됨
 - 다만,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1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11. 7월부터 허용
 - 복수노조 제도는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고, 당초 우려했던 소수 노조 난립이나 창구단일화 관련 노사/노노간 갈등은 거의 없음
 - ※ 일평균 노조 설립: '11. 7월(10.4개)→8월(3.5개)→9월(2.3개)
 - ※ 현장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이행('11. 10. 93.0%), 민주노총 사업장 87.3%, 한국노총 사업장 91.5%가 이행

■ 장애 요인

- 실업자의 기업단위 노조가입¹⁾ 및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의 노조가입²⁾을 금지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ILO와 이견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철회에 대해서는 장애요인 및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

1) 기업별 노조는 해당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인 바, 실업자의 기업 단위노조 가입은 기업별 노조설립 취지와 배치되므로 현재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2) 노조의 자주성 훼손을 방지하고 교섭에 있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집단적 노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조가입 배제

24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브라질)

■ 추진 현황

- '08. 8.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상법 제732조에 대한 개정안 국회 제출
 - 심신미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보호를 위해 생명보험가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가입 후 이들의 생명을 노리는 보험범죄로부터 심신상실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불가
 - 다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상법 제732조 개정안 국회 제출
-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e)항을 유보하였는바, 모든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가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 위 협약과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임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e)항은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 그러한 보험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상법 개정안 국회통과시 유보철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 협약은 모든 차별을 형식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 방식”으로 규정된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① 의사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②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③ 생명보험에 한해 보험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임

■ 향후 추진계획

- 상법 개정안 조속 국회 통과 추진

■ 불수용 사유

- 보안관찰 제도를 필요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인권침해 없음
- 보안관찰 제도는 대상자의 내심이 아닌, 다시 동종 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 또한 현재 보안관찰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 없음

26 강제실종협약 서명(프랑스)

■ 추진 현황

- 대한민국은 강제실종협약에서 규정한 강제실종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이 문제되고 있지는 아니함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강제실종협약 가입 시 쟁점사항에 대한 별도 입법조치 필요 여부 및 국내법과의 조화 검토 필요
 - 강제실종의 정의 및 범죄화
 - 일본인 실종 관련 형사관할권 및 사법공조
 - 자유박탈 사법심사 보장 범위 설정
 -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의 수집·보유
 - 자유박탈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등

■ 향후 추진계획

- 강제실종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 마련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관리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검토 진행 중임

■ 추진 현황

1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 표명
 - 윤여범, 최명진의 개인진정에 대한 '06. 11. 3.자 견해(Views)
 - 정의민 등 11명의 개인진정에 대한 '10. 3. 23.자 견해
 - 정민규 등 100명의 개인진정에 대한 '11. 3. 24.자 견해
- 국방부는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서 '입영 및 징총거부자'로 명칭 변경('09. 2. 18.)
- 입영 및 징총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상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11. 8. 30.)

2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한국정부는 종교에 따른 고용금지 관행이 없음
 - 헌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제2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함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여짐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여부는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에 대한 사항이므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도와 연계 검토 필요
- '08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의견이 많아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1년 헌법재판소는 입영 및 징총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형벌조항에 대해 재차 합헌관정을 하였음
 - ※ '08.12월 여론조사 결과 (갤럽 의뢰) : 입영거부자 대체복무 편입반대 68.1%
- 또한, 남북대치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수급 문제, 비판적 사회여론 등을 고려 시 수용 곤란

■ 향후 추진계획

- 입영 및 징총거부자들의 사회복무 편입은 현재의 안보환경, 사회적, 정책적 여건 속에서 추진이 제한되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 추진 현황

- 현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형법 상 강간, 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만 친고죄로 규정
-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자기 결정권 존중의 측면에서 성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아동·청소년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은 친고죄 폐지

※ '11. 11.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개정

◆ 현재 친고죄로 규정된 성범죄

- 형법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혼인빙자에 의한 간음’을 제외하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비친고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 현재 비친고죄로 규정된 성범죄

- 형법 :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법률에 따른 구금자를 감호자가 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2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 추진 현황

- 우리 정부는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구금시설에 대한 수시 방문,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의도한 고문방지효과는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음
- '08. 6.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법무부 내 협의
- '09. 9.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적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 법무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참석
- '10. 10.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법무부 내 협의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선택의정서 가입시 쟁점사항에 대한 별도 입법조치 필요 여부 및 국내법과의 조화 검토 필요
 - 국가예방기구의 설립 또는 지정, 소속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 방지소위원회·국가예방기구의 접근권·정보권 보장
 - 군 내 구금시설과 군사기밀 보호 문제
 - 입회인 없는 면담기회 제공
 - ※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6항, 보이는 거리 내 감시 허용)과도 상충
 - 방지소위원회·국가예방기구에의 정보제공자 불이익 금지 등

■ 추진 계획

- 정부 내에서 관련 국내법 및 제도의 현황,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국내법 개정 필요성, 부작용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임

■ 추진 현황

-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도입 운영
 - 생활지도를 교육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홍보
- 학생 자치 법정 운영
 - 법무부에서 2006년부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10년, 49개교) 운영
- 체벌금지 명문화('11. 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칙을 제·개정할 때 사전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제9조 제4항 신설)
 - 학생지도 시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체벌을 금지(제31조 제8항 개정)
- 교육적 생활지도 확대
 -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적 지도의 목적으로 비폭력적인 훈계·훈육의 방법으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및 특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학생자치법정, 동아리, 클럽활동)을 통하여 학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완료

■ 추진 현황

● 형법 개정 논의

- 형사법개정특위를 통해 의정서 상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형법에 반영하는 방안 논의

※ 현행법 상으로도 대부분 의정서 상 인신매매행위의 처벌이 가능하나, 의정서 상 인신매매 개념에 맞춰 형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11. 7.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11. 10. 25. 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0. 7. 국제조직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11. 3.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 국회 제출, 현재 법사위 계류 중

■ 장애 요인 및 문제점

- 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만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본 협약 비준에 필요한 국내 이행입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 향후 추진계획

-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 추진
- 인신매매의정서 비준은 외교통상부(조약과)에서 추진

권고내용별 주관부처

| 연번 | 권고내용(국가) | 주관부처 |
|----|---|------------------|
| 1 | 인권협약기구 견해의 이행 및 홍보 노력(브라질) | 법무부 |
| 2 |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이행 노력 강화(인도네시아) | 고용노동부 |
| 3 |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 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 채택(알제리) | 법무부 고용노동부 |
| 4 | 법에 규정된 집회 · 결사의 자유 보장(알제리) | 법무부 경찰청 |
| 5 |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모든 단계에서의 이주자 인권 보장 조치(캐나다) | 법무부 경찰청 |
| 6 |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캐나다) | 법무부 경찰청 |
| 7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캐나다)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 8 |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 기소 및 처벌,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 시각(child - sensitive) 반영 절차 채택(캐나다) | 법무부 보건복지부 |
| 9 | 이주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여성, 아동을 특별히 강조(캐나다) | 여성가족부 |
| 10 | UPR 후속이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 관점(gender perspective) 반영(슬로베니아) | 여성가족부 법무부 |
| 11 |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 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CEDAW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대처 강화 (벨기에) | 법무부 여성가족부 |
| 12 | 여성의 권리증진을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 과제로 고려(이태리) | 법무부 여성가족부 |
| 13 |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를 국제 난민법에 맞게 개선(루마니아) | 법무부 |
| 14 |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개정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캠페인 실행(멕시코) | 여성가족부 |
| 15 |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시스템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멕시코) | 법무부 여성가족부 |

| 연번 | 권고내용(국가) | 주관부처 |
|----|---|----------------|
| 16 |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미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북한),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보안법 도입(영국) | 법무부 |
| 17 |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 조치(영국) | 국방부 |
| 18 | 고문방지의 우려(형법상 고문 정의 부재 및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주장) 및 아동권리위의 우려(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입법·사법 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 채택(북한) |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
| 19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자 권리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의 유보철회(멕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페루) | 법무부 고용노동부 |
| 20 |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을 범죄화하는 입법조치(알제리) | 법무부 |
| 21 |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움 유지(벨기에, 이태리),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2008.6.1 개최되는 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 통과(네덜란드, 영국),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사위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 중인 입법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룩셈부르크) | 법무부 |
| 22 |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도 차별금지법에 포함(체코) | 법무부 보건복지부 |
| 23 | 명확한 시한을 정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 유보철회(영국) | 고용노동부 법무부 |
| 24 |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브라질) | 법무부 |
| 25 | 정치범, 양심수 관련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채택(북한) | 법무부 |
| 26 | 강제실종협약 서명(프랑스) | 법무부 |
| 27 |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 국방부 법무부 |
| 28 |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는데 주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정 재검토 권고(슬로베니아) | 법무부 |
| 29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 법무부 |
| 30 | 학교 내 아동체벌 금지 명문화하기 위한 관련법 즉각 개정 및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 이행(이태리) | 교육과학기술부 |
| 31 | 초국가범죄협약 인신매매 의정서(Palermo Protocol) 비준(페루) | 법무부 |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 현황

발행일 | 2011년 12월 일

발행처 | 법무부 인권정책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디자인 | 동광문화사 02-503-5165

leelee1974@hanmail.net
